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760호
2. 발 의 자 : 이은림 의원
3. 발의일자 : 2025. 5. 26.
4. 회부일자 : 2025. 5. 29.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사업 절차와 내용 전반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해 규정함(안 제1조~제4조).
2.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의 기본 방향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3.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내실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4.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대상학교의 선정, 대상학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5.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대상 의견 수렴,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6.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지침서 개발·보급,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입법예고(2025. 6. 3. ~ 6. 7.)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이은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760호로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서울시 내 초·중등학교는 경제 고도성장과 인구 증가에 힘입어 1980년대를 전후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늘어날 학교시설 개·보수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서울연구원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1960년부터 2000년까지의 초·중등 학교 수는 1980년에서 1985년까지 246개교, 1985년에서 1990년까지 127개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2024년 10월 국회에서 공개된 「시도교육청 경과 연수별 학교 건축물 현황」에서 경과 연수가 40년 이상 된 서울시 내 학교 건축물 비율이 34.85%, 30년 이상인 학교 건축물은 55.03%로 나타났는데,¹⁾ 이처럼 서울의 노후학교 시설이 많은

원인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표-1] 서울시 내 학교급별 학교 수(1960~2000년)²⁾

(단위: 개교)

구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유치원	60 ^{주1)}	102	127	188	271	919	1,398	1,370	1,160
초등학교	101	160	217	252	290	405	463	512	532
중학교	105	113	156	180	201	285	327	352	353
고등학교	102	114	127	148	165	212	239	273	279
초중고 합계	308	387	500	580	656	902	1,029	1,137	1,164
5년 전 대비 학교 수 증감	-	79	113	80	76	246	127	108	27

주1) 유치원의 1960년 데이터는 1961년 자료임.

주2) 분교는 전체수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학교 구성원 안전 및 미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석면 해소·내진 보강 등 위해 요소 제거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의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사업은 2021년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발표와 함께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213개교를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준공 이후 40년이 경과된 노후학교 건물을 안전하고 쾌적한 현대식 친환경 시설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5년까지 18조 5천억원을 투입해 2,835동(약 1,400개교)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1) 김수현 기자(2024.10.6.), 학교 건축물 24%는 준공 40년 이상...서울은 35%가 노후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4132800530> (검색일 2024-06-15)

2) 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데이터로 본 서울 > 지표로 본 서울 변천 2003 > 교육시설,

<https://data.si.re.kr/data/%EC%A7%80%ED%91%9C%EB%A1%9C-%EB%B3%B8-%EC%84%9C%EC%9A%B8-%EB%B3%80%EC%B2%9C-2003/400> (검색일 2025-06-15)

계획되었습니다.³⁾

○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대체공간으로 사용하는 모듈러 교사의 안전성 문제, 학교 구성원의견수렴 부족, 사업내용(미래학교)에 대한 일부 구성원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⁴⁾

○ 이후 사업은 2023년 교육부가 사업명을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사업 대상 선정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에 있어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내용 전반이 개편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4년부터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국비가 분담되는 형태로 2021~2023년부터 추진된 노후학교 개선 사업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2024년 이후 지방비 100% 투입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을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개편 주요 내용⁵⁾

구분	‘21~‘23년	‘24~‘28년	비고
사업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늘봄·돌봄 연계
사업 주체	국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계속사업으로 노후시설 해소
추진 단위	동 단위	학교 단위	공간재구조화 + 성능개선사업 연계
재원 구조	국비+지방비	지방비	국비 잔액은 계속 지원
사업 방식	재정 + 민자		민자사업은 교육청 자율적 규모 조정

3) 교육부 보도자료(2021.2.3.), "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교육 대전환’ -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발표"

4) 조운정 기자(2021.10.17.), 18조 투입한다는데... '그린스마트 학교' 철회 요청 쏟아진 이유, <주간조선>,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0/17/TBHESWR2CRFQTJIVC3I37TPNZY/ (검색일 2025-06-15)

5) 서울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2024.4.), 「2024년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추진 계획」, 4쪽.

- 본 조례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 내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 일체를 ‘서울형 미래학교’로 정의하고 그 추진의 근거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시설 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 적용범위와 서울형미래학교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7조는 대상학교 선정 및 조성 지원,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각각 의견수렴 및 홍보 등과 지침서 등의 개발·보급, 안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정의와 책무, 적용대상에 관한 검토(안 제2조~제4조)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학교시설’과 ‘노후 학교 시설’, ‘서울형 미래학교’, ‘학생’과 ‘학교’ 그리고 ‘학교 구성원’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안 제2조제2호는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후 40년이 경과한 학교시설 중 미관 저해, 구성원 안전 등이 우려되는 시설”로, 안 같은조제3호는 “서울형 미래학교”를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교육과정 개편 및 기후위기 대응, 기술 발전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구축된 학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교육부의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계획 등에서 규정된 개념이나 사업 대상 등과 합치되는 개념적 정의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표-3] 2024년 교육부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개요⁶⁾

IV. 사업 실행계획(안)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노후 학교시설 개축·리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
○ (사업 기간)	2024~2028(5년간, 예산투입년도 기준)
○ (사업 물량)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 1,700동(1동은 2,750㎡)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안전등급 D-E등급)은 40년 미경과된 건물도 사업 추진 가능	

○ 한편, 안 제3조는 교육감에게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의 수립, 지역 특성과 학교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의 추진,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책무 규정은 교육감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두는

6) 교육부 교육시설과(2024.7.), 「공간재구조화사업 실행계획」, 6쪽 일부를 발췌한 것임.

것입니다.⁷⁾

- 이러한 시각에서 동 조문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과정에서 교육감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 관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계속해서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⁸⁾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문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에 관하여 다루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과⁹⁾ 교육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¹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 위법령에 맞춰 규정된 것으로서 타당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7) 법제처(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99쪽.

8)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3) 서울형 미래학교의 기본 방향에 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는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크게 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② 학교 구성원이 안전한 학교,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학교, ④ 첨단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학교, ⑤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개방·공유형 학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추진 중인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표방하는 5대 특화전략인 그린, 스마트, 공간개선, 복합화, 안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표-4]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5대 특화전략¹¹⁾

특화전략	내용
그린	제로에너지실현(온실가스 감축), 관리자동화, 생태교육 공간
스마트	디지털 학습 환경, 유비쿼터스 환경(스마트한 학교 운영·관리 체계 구축)
공간개선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계, 사용자 의견을 담아 교육생활 공간 조성
복합화	학교구성원 의견에 따라 결정(지역사회 개방, 지역주민 공유)
안전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지상에 차 없는 학교, 자동공조 시스템, 감염병 예방 공간 계획, 외부인 동선 출입 분리)

4)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침서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검토(안 제6조, 안 제9조)

- 안 제6조는 교육감이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등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상학교 선정 기준, 재정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9조는 교육감이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침서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11) 서울시교육청(2024),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 72쪽.

마련하고 있습니다.

- 두 조문은 서울형 미래학교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전문성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전개한 2021년 이후 매년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 또는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관련 지침서나 안내서 등 역시 2023년과 2024년 등에 걸쳐¹²⁾ 보급한 전례가 있는 만큼 두 조문의 제정에 따른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대상학교 선정 및 조성 지원, 의견수렴 및 홍보 등에 관한 검토(안 제7조~안 제8조)

- 안 제7조제1항은 교육감이 시설 노후 수준, 학교구성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며, 같은조 제3항은 서울형 미래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통학버스 등의 지원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문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 학교의 선정 절차와 기준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안 제8조는 교육감과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으로 선정된

12)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안내서(개정판)」(서울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2023.1.),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사립학교 지원 및 관리 지침」(서울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2024.2.) 등

학교의 장이 사업 추진에 있어 학교 구성원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 설명회, 토론회 및 우수 학교시설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서울형 미래학교의 사업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궁극적으로 사업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를 줄여 노후학교 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더욱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과¹³⁾ 같은법 제26조의2가¹⁴⁾ 교육시설에 대한 사업 시 사용자 참여를 명시하고, 교육부 고시인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도¹⁵⁾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문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③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 참여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사전기획) ①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6. (생략)

②~④ (생략)

15)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6조(사용자 참여) ① 사용자 참여를 통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신설 등 기존 사용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사용자 참여 수행방식을 사업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1. 학교별 교육비전 및 목표, 특화전략에 따른 공간구성 방안

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과 연계한 사용자의 필요공간 및 요구사항

3. 설계, 시공, 운영 등 사업단계별 의견수렴 절차,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연계 시설 사용 및 운영 주체, 외부 유관 및 전문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계자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②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 교육시설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다. 집행기관 의견에 관한 검토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미래학교”가 미래교육을 담는 학교 또는 장차 구성될 이상적 학교 등으로 해석되면 실제 사업내용 등을 인식하는데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며, 타 부서에서 “서울형 미래학교” 관련 사업 추진 시 그 개념이 공간개선으로만 한정되어 정책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바,

조례명에 “공간”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6.4.).¹⁶⁾

- 이러한 의견처럼 조례명에 “공간”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조례의 제정목적과 규정 범위, 내용 등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안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고, 안 제2조제3호에서 다루고 있는 “서울형 미래학교”의 개념에서도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구축된 학교”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시행에 따른 개념상 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	----------------	-------	----------------

16)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6.4.)

관계 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사대지(校舍垓地)·체육장 및 실습지
 -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2.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안전관리”란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교육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란 교육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정서,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내외 교육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4.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 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시설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감염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 참여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사전기획) ①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3. 교육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 ④ 그 밖에 사전기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2. 7.] [교육부령 제349호, 2025. 2. 7., 일부개정]

제4조(사용자 참여)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축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